#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언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741

발의연월일: 2020. 8. 6.

발 의 자 : 송언석 • 구자근 • 황보승희

권명호 • 박덕흠 • 임이자

정진석 · 김상훈 · 김정재

김석기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 할 수 있는 사고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.

이와 관련하여 최근 전국에서 지반침하 및 이로 인한 사고가 지속 적으로 발생하여 지하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임에도 중 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을 통한 사고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 는데, 이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사고의 요건이 대통령령으로 엄격하게 규정되어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의 요건을 현행보다 완화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중앙지 하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·운영을 통한 사고조사를 활성화하고 보다 안 전한 지하환경을 조성하고자 함(안 제46조의2 신설 등).

#### 법률 제 호

###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6조의 제목 "(사고조사 등)"을 "(사고의 통보)"로 하고, 같은 조 제 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6조의2(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반침하로 인하여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- 1. 면적 3제곱미터 또는 깊이 1.5미터 이상의 지반침하가 발생한 사고
- 2. 사망자·실종자 또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고
- 3.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걸친 사고로서 관할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사를 요청한 사고
- 4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피해의 정도가 중대하여 전문적인 조 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고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에서 지반침하로 인하여 발생한

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하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- ③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및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에 필요한 현장보존, 자료제출, 관련 장비의 제공 및 관련자 의견청취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고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및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·운영과 사고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7조제1항제7호 중 "제46조"를 "제46조 및 제46조의2"로 한다.

제48조 본문 중 "제46조"를 "제46조의2"로 한다.

제50조제5호 중 "제46조"를 "제46조의2"로 한다.

제56조제3항제17호 중 "제46조"를 "제46조의2"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6조 <u>(사고조사 등)</u> ①・② (생	제46조 <u>(사고의 통보)</u> ①·② (현
략)	행과 같음)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	<u>&lt;</u> 삭 제>
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	
가 발생한 사고의 경위 및 원	
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	
한 경우에는 중앙지하사고조사	
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	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	<u>&lt;삭 제&gt;</u>
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위	
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	
필요한 경우에는 지하사고조사	
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	
⑤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	<u>&lt;삭 제&gt;</u>
시설물관리자는 제3항 및 제4	
항에 따른 중앙지하사고조사위	
원회 및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	
사고조사에 필요한 현장보존,	
자료제출, 관련 장비의 제공 및	
관련자 의견청취 등에 적극 협	
조하여야 한다.	
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	<u>&lt;</u> 삭 제>
에 따라 사고조사를 실시한 경	

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.

⑦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중 | <삭 제> 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및 지하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·운영과 사고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신 설>

- 제46조의2(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 회의 구성 등) 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반침하로 인하여 발 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중앙지하사고조 <u>사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</u> 수 있 다.
  - 1. 면적 3제곱미터 또는 깊이 1.5미터 이상의 지반침하가 발생한 사고
  - 2. 사망자·실종자 또는 부상자 가 2명 이상 발생한 사고
  - 3.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걸친 사고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단 독 또는 공동으로 국토교통부

장관에게 조사를 요청한 사고

4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

피해의 정도가 중대하여 전문

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

하는 사고
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에서 지반침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하사고조사위원회 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- ③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 시설물관리자는 제1항 및 제2 항에 따른 중앙지하사고조사위 원회 및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에 필요한 현장보존, 자료제출, 관련 장비의 제공 및 관련자 의견청취 등에 적극 협 조하여야 한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고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 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및 지하

- 1. ~ 6. (생략)
- 7. <u>제46조</u>에 따른 지반침하 사고 및 피해 현황·통계에 관한 사항
- 8. (생략)
- ②・③ (생 략)

제48조(비밀유지의무) 지하안전영 지하명가등의 수행,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의 검토 또는 <u>제46조</u>에 따른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. 다만,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

<u>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·운영과</u>
사고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
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제47조(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·
순영) ①
1. ~ 6. (현행과 같음)
7. <u>제46조 및 제46조의2</u>
8. (현행과 같음)
②·③ (현행과 같음) 제48조(비밀유지의무)
세40조(미월ㅠ시의구)
제46조
<u> </u>
<u> </u>
· 

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제50조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 제50조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 제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「형법」 제1 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 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 \_\_\_\_\_ 1. ~ 4. (생략)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제46조에 따른 중앙지하사고 5. 제46조의2-----조사위원회 및 지하사고조사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56조(과태료) ① • ② (현행과 제56조(과태료) ① • ② (생 략) 같음)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-----. 1. ~ 16. (생략) 1. ~ 16. (현행과 같음) 17. 제46조에 따른 사고조사를 17. 제46조의2-----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

④ (현행과 같음)

④ (생략)